

심의결과 위안대로그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의자
제 5호	제 5차	1987. 2.12	총재 박성상

의안 "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"
일부 개정

의결사항 "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"
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 7조
법규조항

제의취지 최근의 금융시장여건을 감안, CD 발행단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
은행금융기관의 수신경쟁력을 보강하는 한편 제2금융권 유사상품
수신 최저한도와의 형평유지 및 CD 발행한도 확대의 효과를
제고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<참 고> 관계법규조항 발췌

한 국 은 행 법 제 7 조

① (생략)

② 금융통화은영위원회는 이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은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은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- ⑥ (생략)

(붙임)

"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" 일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1.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가. (생략) 나. 증서단위금액 : <u>1억원</u> 다-라. (생략)	1.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증서단위금액 : <u>5천만원</u> 다-라. (현행과 같음)
2 - 4. (생략) <u>(신설)</u>	2 - 4. (현행과 같음) 5. 실시일자 : 1987. 2. <u>13</u>